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김현아*

〈요 약〉

본 연구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과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세무전문성의 지식전이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표본의 상당부분이 대형회계법인으로 구성되었고, 세무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대형회계법인과 달리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부분 파트너와 부서의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세무전문성에 대해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기업 중 중소형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 3,829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세무전문성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상 세무자문 중 기타자문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로 정의하고,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세무전문성은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유지되어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은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으로 회계감사 매출액 대비 기타세무 매출액 비중으로 정의한 경우에도 연구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 측정치를 새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조세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인 만큼 중소형 회계법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택할 필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존재한다.

〈주제어〉 세무전문 감사인, 조세회피, 중소형 회계법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부교수, kukolo@koreatech.ac.kr, 주저자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19일

1차수정일 2024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10일

I. 서 론

본 연구는 세무전문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중소형 회계법인에게 감사받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세무전문일 경우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2020년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장회사 감사에서 중소형 회계법인(non-Big4)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 감사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ig4 뿐 아니라 non-Big4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non-Big4는 규모, 보유자원, 내부프로세스, 명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Big4와 다르고(DeFond and Zhang 201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9항 제2호 관련 [별표 4]의 감사인 지정 방법에서도 Big4에 해당하는 가군은 나머지 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장기업 시장은 실질적으로 Big4와 non-Big4 대상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특히 세무분야의 경우 세무부문을 별도로 구성하여 세무 전문성도 갖추고 있는 Big4와 달리 non-Big4의 경우 별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세무전문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²⁾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를 통해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세무전문 non-Big4도 피감사기업의 조세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McGuire et al.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분야가 구분되지 않는 non-Big4의 특성상 피감사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무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세무전문성을 활

1) [별표 4] 감사인 지정 방법 제2항 회계법인 구분(2022년 9월 개정 전)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직전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직전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 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2명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2)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IV. 인력에 관한 사항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정보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기타로 구분하여 인원과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Big4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반면 non-Big4는 사업부문이 구분되지 않아 매출기여도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on-Big4의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 분석은 피감사기업에게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만약 세무전문 감사인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킨다면, 적극적인 조세전략을 희망하는 피감사기업은 세무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조세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피감사기업은 감사인 선임 시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표본의 70~80%가 Big4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전문성을 세무분야 시장 점유율 25~30% 초과로 정의할 수 있으나(McGuire et al.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non-Big4의 특성상 해당 기준 충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n-Big4의 사업보고서 공시 중 세무분야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를 세무전문 non-Big4로 정의한다. 세무분야 매출액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상 세무자문 중 기타세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세무조정 은 모든 기업에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활동인 반면 세무자문은 비정기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수수료 측면에서도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non-Big4의 세무전문성 측정지표로서 기타세무 매출액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³⁾ 조세회피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라 측정하였다(정광화와 기은선 2018 ; 정남철 2024).

2020년부터 2022년까지 non-Big4에게 감사받은 상장기업 3,829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세무전문 non-Big4일수록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전문성을 회계감사 매출 대비 기타세무 매출 비중으로 측정한 경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non-Big4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조세전략 수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감사인의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non-audit service, NAS) 제공여부를 고려한 분석결과에서는 감사인이 NA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세무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도 세무 관련 NAS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세 측면에서 기업이 유리하게 의사결정 하도록 돕기보다는 감사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non-Big4에 대해 세무전문성 지식전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회계감사 시장과 관련하여 최근 다양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⁴⁾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중 세무자문 분야는 세무조정, 회계기장, 기타세무로 구분되어 표시되고 있다. Big4에 대해서도 기타세무의 매출규모가 세무조정 대비 약 6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세무자문 수수료가 기타세무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non-Big4 재직자를 통해 세무자문 매출액이 기타세무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4)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4.28.)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별첨) 2021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의 주요 감리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세무전문성이 non-Big4 규모에 따라 정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non-Big4 중 회계사 수 및 총매출액 기준 1위 회계법인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세무전문성이 회계법인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무전문성을 세무자문과 기타세무의 매출합계로 재정의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결과가 유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non-Big4에 대해 세무전문성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Big4 중심의 선행연구를 확장하고,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피감사기업의 기대와 다르게 조세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특히 세무전문 non-Big4가 독립성 측면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non-Big4의 감사품질과 관련한 부정적인 우려가 지배적인 가운데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non-Big4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non-Big4에 대해 새로운 세무전문성 측정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선행연구는 산업전문성과 동일하게 연도-산업별로 세무조정보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를 세무전문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non-Big4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감사보수와 달리 세무조정보수는 감사인이 세무조정을 수행한 경우에만 자료가 공시되고 있어 자료의 완전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감사인 수준에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세무자문 중 기타세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무전문성을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존재한다. non-Big4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세무전문성 측정치는 향후 여러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제Ⅱ장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가설을 설계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설계와 표본을 설명한다. 제Ⅳ장은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면서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계

1. 감사인의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법인세는 개별 기업의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이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모든 거래는 조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관련 독립성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적절한 운영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2020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이후 감독당국의 감사인 독립성 관련 모니터링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회피(tax avoidance)로 간주된다(Dyrenge et al. 2008). 조세회피는 원래 법인세로 납부되어야 할 현금 자원을 기업 내에 보유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영자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복잡한 거래를 통해 정보투명성을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명성을 손상시킬 위험도 존재한다(Graham and Tucker 2006 ; Desai and Dharmapala 2009 ; Wang et al. 2020).

세금 신고 준비자(tax preparer)는 기업이 정당한 공제(deductions)나 세액 공제(credits)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적용에 도움을 주지만, 세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세금 혜택(tax benefits)을 주장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도와 기업의 세금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다. 감사와 세무업무 모두 기업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Gleason and Mills(2011)은 감사인이 제공한 세무 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s)가 세금 준비금(tax reserves) 추정을 개선한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세무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감사와 재무보고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이영한 등(2010)이 2004년부터 2008년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의 조세부담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감사와 세무분야 간에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와 달리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낮춰 감사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lsadoun et al.(2018)은 투자자들은 세무 관련 NAS를 많이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재무보고의 질이 낮은 기업보다는 불확실한 세금 준비금을 보고하는 기업에서 주로 관찰된다는 결과를 통해 세무 관련 NAS가 야기할 수 있는 처벌 또는 현금흐름 위험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무 관련 NAS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석한다. Klassen et al.(2016)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된 기업의 법인세 신고서 서명자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서 준비자가 조세 공격성(tax aggress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세금 신고를 감사인이 한 경우보다 자체적으로 하거나 감사인 이외 외부자(external non-auditor)를 활용하였을 때 더 공격적인 세금 정책을 나타냈으며, 감사인에게 제공한 세무 수수료와 조세 공격성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세무 NAS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Big4는 감사인일 때 조세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Big4의 경우 감사와 세무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감사인의 조세 공격성을 높이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McGuire et al.(2012)는 산업전문성을 조세분야로 확장하여 세무 관련 산업전문성(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세무전문가일 때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도가 커지고, 감사인이 산업전문가이면서 세무전문가인 경우 더 적극적으로 조세회피 전략을 활용함을 발견하여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김은희와 김임현(2017)은 국내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와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감사인이 산업의 세무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도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⁵⁾ 세무전문성은 세무서비스 효율성과 감사품질 둘 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일 회계법인이나 사무소 내에서 지식이 다양한 업무를 통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에게 세무 관련 NAS를 구매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구매할 때에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Sun and Habib 2021).

한편 Goldman et al.(2022)은 세무 지식이 주로 과업에 특화된(task-specific)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착안하여 회계법인 사무소 수준(office-level)에서의 세무지식 축적이 법인세 관련 계정의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복잡한 세무 문제와 불확실한 세금 혜택을 많이 경험한 사무소일수록 법인세 계정 오류 발생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Big4 파트너 및 시니어매니저와의 인터뷰에서도 법인세 계정과목의 감사는 주로 산업전문성 보다 일반적인 세무 업무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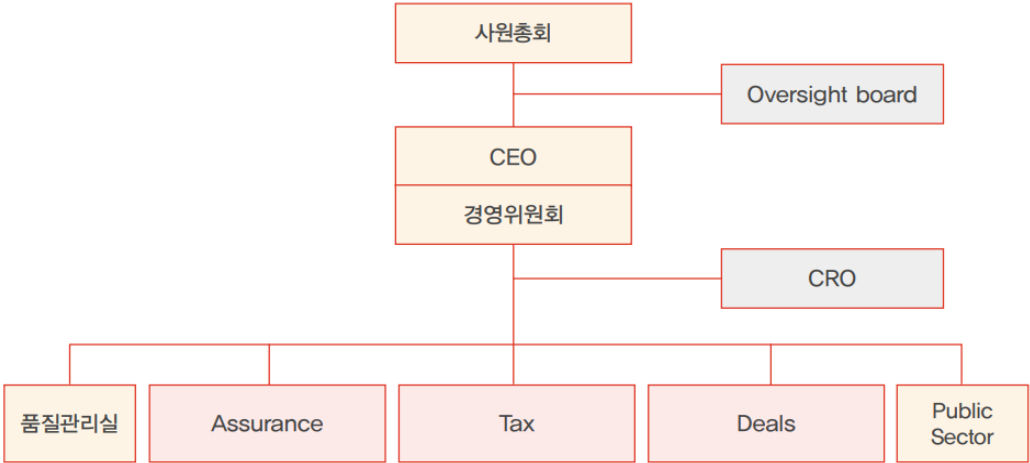
2. 중소형 회계법인의 특성

규모가 크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충분하게 보유하는 Big4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업무별로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non-Big4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본부체제로 수입되는 업무에 따라 회계감사, 세무자문 및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러한 특성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IV. 인력에 관한 사항 2. 사원(출자)·이사 현황에서 Big4는 이사별로 담당업무를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으로 명확하게 구분·보고하지만, non-Big4는 이사별 차이 없이 ‘회계감사 등’으로 공통적으로 기입하고,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공시에서도 Big4는 업무에 따라 인원 구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반면 non-Big4의 경우 사업부인이 구분되지 않아 인원 및 보수가 매출액 비율로 안분됨을 첨언한다.⁶⁾

5) McGuire et al.(2012)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Audit Analytics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표본 중 Big4의 비중이 80.9%이고, 김은희와 김임현(2017)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을 이용하였으며, 표본의 70.4%가 Big4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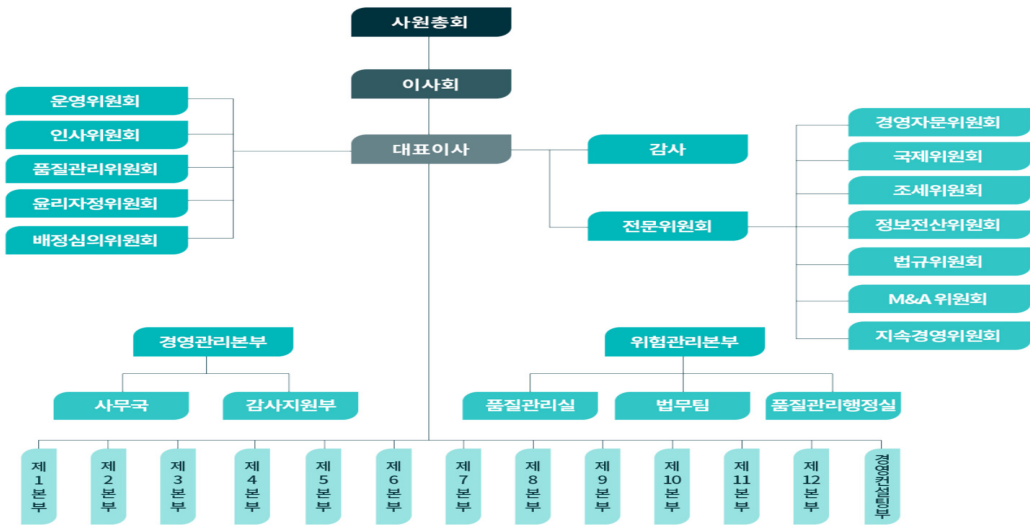
6) 삼덕회계법인 사업보고서(2022.6.30.)에 따르면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는 ‘기장매출을 제외한 총 매출액에 대한 각 부문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삼일회계법인 조직 구성



출처 : 삼일회계법인 2022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그림 2〉 삼덕회계법인 조직 구성



출처 : 삼덕회계법인 홈페이지

<표 1>의 업무 매출 및 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non-Big4는 회계감사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 (약 45% 내외)을 나타내며, 세무자문과 경영자문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Big4의 경우 경영자문이 50%에 근접하여 매출비중이 가장 크고, 회계감사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세무자문은 20% 내외로 다른 업무에 비해 매출비중은 다소 작은 편이다. 그러나

Big4의 인원비중을 같이 살펴보면, 15%의 인원으로 20% 수준의 세무자문 매출이 실현되고 있어 기여도가 낮지 않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on-Big4의 경우 업무 구분이 불분명하여 매출비중에 따라 인원을 공시하고 있어 회계감사 및 세무자문의 인원비중과 매출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회계법인의 업무 매출 및 인원 비중

(단위 : %)

구분		매출비중				인원비중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기타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기타
non-Big4	2020	46.63	24.82	22.60	5.96	46.94	24.61	10.65	17.81
	2021	44.80	23.50	26.31	5.39	47.46	23.97	11.35	17.12
	2022	46.70	23.36	26.44	3.50	48.73	23.69	11.52	16.06
Big4	2020	33.28	20.28	46.44	0.00	49.17	16.19	28.05	6.59
	2021	31.57	18.46	49.98	0.00	48.73	15.13	29.66	6.48
	2022	32.78	18.98	48.24	0.00	49.50	15.23	28.98	6.29
전체	2020	37.94	21.87	38.11	2.08	48.24	19.69	20.81	11.26
	2021	36.20	20.22	41.69	1.89	48.22	18.71	22.26	10.78
	2022	37.71	20.53	40.52	1.30	49.20	18.55	22.14	10.12

추가적으로 <표 2>의 세무자문 매출 세부 구성비를 살펴보면, non-Big4 전체의 세무조정 및 기타세무 평균 구성비는 37.87%와 24.05% 수준이나, Big4의 구성비는 기타세무가 79.20%로 세무자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흥미로운 것은 non-Big4 중 기타세무 매출 기준 매년 1위와 2위로 구성된 세무전문 non-Big4의 비율인데, 세무조정과 기타세무의 구성이 non-Big4와 다르고 Big4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ig4의 경우 업무별 조직이 구분되고 풍부한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무 전문성이 non-Big4에 비해 우월함을 고려할 때, 유사 구성비를 나타내는 세무전문 non-Big4는 다른 non-Big4에 비해 세무전문성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세무자문 매출 세부 구성비

(단위 : %)

구분	non-Big4	세무전문 non-Big4	Big4
세무조정	37.81	15.01	15.58
기타세무	24.05	73.89	79.20

* 세무자문은 세무조정, 회계기장, 기타세무로 구성됨(회계기장 매출 구성비 생략). 구성비는 각 회계법인 별 구성비의 평균이고, 세무전문 non-Big4는 기타세무 매출기준 매년 1, 2위 해당 회계법인의 구성비의 평균으로 산출함.

<표 3>은 상위 5개 non-Big4의 기타세무와 세무조정 매출의 점유율과 공인회계사 수를 제시한다. 먼저 [Panel A]의 기타세무 매출을 살펴보면, 1, 2위를 삼덕, 서현, 보현이 차지하고 있으며, 삼덕이 non-Big4 중 가장 많은 회계사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현과 보현이 기타세무 관련하여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non-Big4의 고객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임을 고려할 때 순위 간 점유율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1위와 2위의 점유율 차이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1위의 세무전문성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Panel B]의 세무조정 매출에서는 대주와 삼덕이 지속적으로 1, 2위를 유지하는데 대주가 삼덕 다음으로 non-Big4 중 많은 회계사 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 규모와 세무조정 매출 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위 간 점유율 차이도 기타세무 매출에 비해 미미하다. 회계분야에서 전문성을 일반적으로 차별적인 시장점유율을 근거하여 정의함을 고려할 때 세무조정 매출에 근거하여 세무전문성을 정의하는 것은 기타세무 매출에 기초한 정의에 비해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상위 5개 non-Big4의 세부매출 점유율 및 공인회계사 수

(단위 : %)

[Panel A] 기타세무 매출									
순위	2020			2021			2022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1	삼덕	10.69	588	서현	15.07	128	서현	13.00	128
2	서현	8.58	120	보현	10.90	38	보현	9.61	44
3	성현	8.41	166	삼덕	10.00	628	성현	7.53	181
4	보현	7.42	40	성현	6.48	157	대주	6.64	508
5	신한	5.61	243	신한	6.22	279	삼덕	6.47	661

[Panel B] 세무조정 매출									
순위	2020			2021			2022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감사인명	점유율	회계사수
1	대주	9.58	447	대주	9.68	467	대주	9.45	508
2	삼덕	8.60	588	삼덕	8.51	628	삼덕	8.90	661
3	한울	7.34	239	한울	7.84	257	한울	7.74	293
4	신한	5.38	243	이촌	6.23	197	이촌	6.39	226
5	태성	4.70	119	신한	5.61	279	신한	5.53	284

* 점유율은 non-Big4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별 사업보고서 상 세무조정 매출을 기준으로 측정함.

3. 연구가설

조세회피가 납부세금의 감소보다는 기업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리인 이론에 근거하여 경영자가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조세회피를 이용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조세회피는 감독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이슈 중 하나이다(Wang et al. 2020). 특히 감사인의 경우 회계지식 뿐 아니라 조세회피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는 세무지식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 측면에서 감사인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감사인은 지식전이 효과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납부세금을 줄여 조세회피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Gleason and Mills 2011 ; McGuire et al. 2012 ; 이영한 등 2010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그러나 선행연구의 표본은 상당부분 Big4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결과가 non-Big4에도 적용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며, non-Big4가 조세회피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2020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시행으로 상장기업 감사시장에서 피감사법인 수 기준 non-Big4의 비중이 2019년 약 62%에서 2022년 약 68%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non-Big4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Big4는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업무를 구분하여 각 업무별 파트너를 선임하고 직원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 업무별로 상당한 전문지식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non-Big4의 경우 파트너의 업무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직도가 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산업별 세무전문성을 각 산업-연도별로 세부 관련 점유율이 25~30%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McGuire et al.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이 조세전략 측면에서도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으나, non-Big4가 선행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non-Big4의 세무전문성은 피감사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non-Big4의 독립성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⁷⁾ 피감사기업의 미래 세무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non-Big4가 세금 감소와 관련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고, 감사인의 관점에서 충실히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⁸⁾

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7.26.)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8) 피감사기업이 세무상 접대비가 아닌 비용을 회계상 접대비로 분류한 경우 회계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정재분류를 권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 않거나, 외관상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여 세무전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적절한 세금 절약 방안을 안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Chyz et al.(2023)이 세무 관련 NAS를 세무계획(tax planning)과 세무조정(tax compliance)으로 구분하여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세무 관련 NAS와 감사품질 간의 양(+)의 관련성은 주로 세무조정에서 기인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Goldman et al.(2022)은 산업 특유의 세무지식 보다 일반적인 세무전문성이 조세전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세무조정 업무도 수행하는 non-Big4의 세무전문성도 지식전이 효과를 통해 피감사회사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여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의 형태로 설정한다.

연구가설 : non-Big4의 세무전문성은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다.

III. 연구의 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는 non-Big4의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 다음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McGuire et al.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 정남철 2024).

$$\begin{aligned} TaxAvoid_{i,t} = & \beta_0 + \beta_1 nB4TaxL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 + \beta_6 ROA_{i,t}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 + YD + ID + \epsilon_{i,t} \end{aligned} \quad (1)$$

TaxAvoid :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 ;

nB4TaxL : non-Big4 중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면 1, 아니면 0 ;

CFO : 영업현금흐름/평균 총자산 ;

FOR : 외국인 지분율 ;

SIZE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V : 총부채/평균 총자산 ;

ROA : 당기순이익/평균 총자산 ;

LOSS : 이익잉여금이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

PPER : (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평균 총자산 ;

RD : 연구개발비 총액/매출액 ;

AudChg : 감사인 변경된 경우 1, 아니면 0 ;

YD : 연도더미 ;

ID : 산업더미.

종속변수인 *TaxAvoid*는 조세회피를 나타내는 변수로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라 측정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 (2)와 같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총발생액($TAcc$)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산출된 잔차로 $TaxAvoid$ 를 측정하였다.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BTD 에서 이익조정 효과를 통제하는 장점이 존재하여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변수이며(정광화와 기은선 2018 ; 정남철 2024),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도가 높은 것으로 정의된다.

$$BTD_{i,t} = \gamma_0 + \gamma_1 TAcc_{i,t} + \epsilon_{i,t} \quad (2)$$

BTD : (영업이익-세무이익)/전기말 총자산, 여기서 세무이익은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율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법인세부담액은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자산의 기중 변동을 가산하고, 이연법인세부채의 기중 변동을 차감하여 산출함 ;

$TAcc$: (당기순이익-영업현금흐름)/전기말 총자산.

관심변수는 $nB4TaxL$ 로 non-Big4 중 세무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다. 세무전문성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사업부문별 매출액에서 세무자문 중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로 정의하였다. 세무자문 매출액은 세무조정, 회계기장, 기타세무로 구분하여 공시되며, 회계기장은 단순한 부기에 해당하여 세무전문성 측정치로 적절하지 않고, 세무조정의 경우 회계법인이 세무분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수행하는 반복 업무 중 하나이다. 이와 달리 기타세무는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등 비반복적이고 수수료의 규모가 대체로 큰 업무들과 관련이 있어 세무조정에 비해 차별적인 세무지식이 요구되므로 회계법인의 세무전문성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한다면, $nB4TaxL$ 의 계수인 β_1 은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강화가 non-Big4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β_1 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변수를 포함하였다. 영업현금흐름(CFO)과 수익성(ROA)이 양호할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지분율(FOR)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은희와 김임현 2017 ; 정남철 2024). 기업규모($SIZE$)가 크고,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복잡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고(McGuire et al. 2012 ; 정남철 2024), 유형자산($PPER$)과 연구개발비(RD) 및 이월결손금($LOSS$)은 법인세납부액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으며, 감사인 교체($AudChg$)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로 통제하였다(김은희와 김임현 2017).

2.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한 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연도 3,829개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세무전문성

측정에 필요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가 다음 연도 6월에서 9월에 공시되어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속변수의 경우 상·하위 1% 수준으로 조정(winsorization)하여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1) 감사인이 non-Big4이고,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 (2) 결산월이 12월인 비금융업 기업
- (3) DataGuide와 VALUESearch(구, KisValue)에서 기업 자료가 추출 가능한 기업

연도 및 산업별 표본 분포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이후 non-Big4가 감사하는 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 도소매, 과학기술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 분포

[Panel A] 연도별 분포							
연도	2020	2021	2022	합계			
표본 수	1,235	1,257	1,337	3,829			
[Panel B] 산업별 분포							
산업	제조	정보통신	도소매	과학기술	건설	기타	합계
표본 수	2,707	418	309	223	111	61	3,829
구성비율	70.70	10.92	8.07	5.82	2.90	1.59	100.00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조세회피(TaxAvoid)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0.002와 0.109로 선행연구(평균값 0.009, 표준편차 0.093)와 유사하게 나타났다(정광화와 기은선 2018). non-Big4 중 세무전문가는 세무자문 중 기타매출 기준 1위로 정의한 경우(nB4TaxL1)와 1위와 2위로 정의한 경우(nB4TaxL2)의 평균이 각각 0.060과 0.067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는데, 변수를 확인한 결과 2위로 정의된 감사인 중 세무분야 매출이 집중되고 피감사기업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기업규모(SIZE)를 비롯한 재무변수들의 평균이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non-Big4의 피감사기업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감사인 교체(AudChg) 평균은 0.329로 다소 높은데

2020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5〉 기술통계

변수명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i>TaxAvoid</i>	3,829	-0.002	0.109	-0.040	-0.001	0.038
<i>nB4TaxL1</i>	3,829	0.060	0.237	0.000	0.000	0.000
<i>nB4TaxL12</i>	3,829	0.067	0.251	0.000	0.000	0.000
<i>CFO</i>	3,829	0.026	0.099	-0.022	0.029	0.081
<i>FOR</i>	3,829	0.044	0.068	0.009	0.019	0.047
<i>SIZE</i>	3,829	18.764	0.909	18.116	18.705	19.372
<i>LEV</i>	3,829	0.371	0.209	0.197	0.355	0.517
<i>ROA</i>	3,829	-0.006	0.131	-0.043	0.019	0.061
<i>LOSS</i>	3,829	0.285	0.451	0.000	0.000	1.000
<i>PPER</i>	3,829	0.125	0.114	0.036	0.092	0.181
<i>RD</i>	3,829	0.105	0.470	0.002	0.016	0.053
<i>AudChg</i>	3,829	0.329	0.470	0.000	0.000	1.000

1) 변수 정의 : *TaxAvoid*=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조세회피 측정치 ; *nB4TaxL1*=non-Big4 중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1위면 1, 아니면 0 ; *nB4TaxL12*=non-Big4 중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1위 또는 1위와 2위면 1, 아니면 0 ; *CFO*=영업현금흐름/평균 총자산 ; *FOR*=외국인 지분율 ; *SIZE*=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LEV*=총부채/평균 총자산 ; *ROA*=당기순이익/평균 총자산 ; *LOSS*=이익잉여금이 0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 *PPER*=(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평균 총자산 ; *RD*=연구개발비 총액/매출액 ; *AudChg*=감사인 변경된 경우 1, 아니면 0.

〈표 6〉은 주요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TaxAvoid*와 non-Big4 세무전문가(*nB4TaxL1*, *nB4TaxL12*) 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관찰되어 non-Big4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식전이 효과를 통해 조세회피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TaxAvoid*와 기업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수익성(*CFO*, *ROA*)가 크고, 기업규모(*SIZE*)가 크고, 유형자산 비율(*PPER*)이 높을수록 *TaxAvoid*가 높고 이월결손(*LOSS*)이 존재하거나 연구개발비(*RD*) 규모가 큰 경우 *TaxAvoid*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전문성 변수인 *nB4TaxL1*과 *nB4TaxL12* 간의 상관계수는 0.936으로 매우 높은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세무 매출 기준 2위 기업이 상장회사 회계감사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분석에서 세무전문성과 관련하여 회계감사 매출 대비 기타세무 매출 비중으로 정의하여 분석을 재 실시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본 연구의 주된 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6〉 Pearson 상관계수

변수명	TaxAvoid	nB4TaxL1	nB4TaxL12	CFO	FOR	SIZE	LEV	ROA	LOSS	PPER	RD	AudChg
TaxAvoid	1.000											
nB4TaxL1	0.032 (0.049)	1.000										
nB4TaxL12	0.032 (0.050)	0.936 (0.000)	1.000									
CFO	0.314 (0.000)	0.005 (0.770)	0.016 (0.310)	1.000								
FOR	0.011 (0.507)	0.024 (0.135)	0.030 (0.063)	0.149 (0.000)	1.000							
SIZE	0.080 (0.000)	0.014 (0.400)	0.025 (0.124)	0.202 (0.000)	0.253 (0.000)	1.000						
LEV	0.010 (0.524)	0.001 (0.965)	0.014 (0.378)	0.124 (0.000)	0.094 (0.000)	0.137 (0.000)	1.000					
ROA	0.299 (0.000)	0.018 (0.271)	0.007 (0.645)	0.546 (0.000)	0.153 (0.000)	0.304 (0.000)	0.180 (0.000)	1.000				
LOSS	0.182 (0.000)	0.039 (0.015)	0.026 (0.101)	0.394 (0.000)	0.135 (0.000)	0.360 (0.000)	0.225 (0.000)	0.581 (0.000)	1.000			
PPER	0.085 (0.000)	0.013 (0.427)	0.007 (0.642)	0.159 (0.000)	0.028 (0.085)	0.074 (0.000)	0.190 (0.000)	0.078 (0.000)	0.100 (0.000)	1.000		
RD	0.198 (0.000)	0.013 (0.405)	0.018 (0.276)	0.288 (0.000)	0.014 (0.370)	0.112 (0.000)	0.046 (0.004)	0.283 (0.000)	0.211 (0.000)	0.030 (0.063)	1.000	
AudChg	0.009 (0.569)	0.108 (0.000)	0.122 (0.000)	0.044 (0.006)	0.008 (0.610)	0.072 (0.000)	0.013 (0.429)	0.089 (0.000)	0.105 (0.000)	0.019 (0.243)	0.041 (0.011)	1.000

-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 2) 괄호 안은 p-value 값을 나타냄.

2. 중소형(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본 연구는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며, 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1)과 (2)는 각각 세무전문성(*nB4TaxL*)을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1위(*nB4TaxL1*)와 1, 2위(*nB4TaxL12*)로 정의한 결과이다.

<표 7>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axL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변수명	(1) nB4TaxL1		(2) nB4TaxL12	
	계수	t값	계수	t값
<i>nB4TaxL</i>	-0.013	-1.73*	-0.015	-2.07**
<i>CFO</i>	0.226	7.69***	0.226	7.69***
<i>FOR</i>	-0.054	-1.72*	-0.054	-1.71*
<i>SIZE</i>	-0.004	-1.59	-0.004	-1.57
<i>LEV</i>	0.023	2.20**	0.023	2.22**
<i>ROA</i>	0.153	4.54***	0.153	4.55***
<i>LOSS</i>	-0.000	-0.00	-0.000	-0.00
<i>PPER</i>	0.041	2.40**	0.041	2.39**
<i>RD</i>	-0.023	-3.52***	-0.023	-3.52***
<i>AudChg</i>	0.003	0.93	0.003	0.96
<i>Constant</i>	0.048	1.14	0.048	1.13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 R ²	0.137		0.137	
F-value	15.519***		15.583***	
N	3,829		3,829	

-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표 7>의 (1)과 (2)에서 관심변수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nB4TaxL1*, *nB4TaxL12*)은 조세회피(*TaxAvoid*)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에서 *nB4TaxL1*의 계수 값은 -0.013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고, (2)에서 *nB4TaxL1*의 계수 값은 -0.015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지식전이 효과를 통해 조세회피를 높인다는 선행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non-Big4에 대해서는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지식전이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⁹⁾

감사인의 세무 관련 NAS 제공은 감사인의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Sun and Habib 2021), <표 8>에서는 감사인이 세무 NAS를 제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8>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axL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Panel A] 감사인이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변수명	(1) nB4TaxL1		(2) nB4TaxL12	
	계수	값	계수	값
nB4TaxL	0.001	0.05	-0.014	-0.71
CFO	0.193	2.89***	0.190	2.84***
FOR	-0.179	-2.79***	-0.179	-2.81***
SIZE	-0.000	-0.06	-0.000	-0.07
LEV	-0.004	-0.17	-0.004	-0.18
ROA	0.129	1.65*	0.131	1.67*
LOSS	0.000	0.02	0.000	0.01
PPER	0.075	2.18**	0.074	2.14**
RD	0.001	0.07	0.000	0.04
AudChg	0.004	0.39	0.004	0.39
Constant	-0.003	-0.03	0.000	0.00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 R ²		0.078		0.078
F-value		4.10***		4.14***
N		701		701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9)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원펌(one firm)으로 운영되는 Big4와 달리 non-Big4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지식전이 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2010).

<표 8> 비감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계속)

[Panel B] 감사인이 세무 관련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변수명	(1) nB4TaxL1		(2) nB4TaxL12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nB4TaxL	-0.016	-1.92*	-0.015	-1.97**
CFO	0.233	7.21***	0.233	7.22***
FOR	-0.032	-0.95	-0.032	-0.95
SIZE	-0.004	-1.57	-0.004	-1.57
LEV	0.028	2.50**	0.029	2.52**
ROA	0.154	4.28***	0.154	4.28***
LOSS	0.000	0.01	-0.000	-0.01
PPER	0.032	1.62	0.031	1.62
RD	-0.031	-4.53***	-0.031	-4.53
AudChg	0.003	0.76	0.003	0.79
Constant	0.053	1.13	0.052	1.12
연도더미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Adj. R ²	0.152		0.152	
F-value	14.726***		14.709***	
N	3,128		3,128	

- 1) 변수 정의는 <표 1>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표 8>의 [Panel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감사인이 세무 관련 NAS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nB4TaxL*과 *TaxAvoid*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감사인이 세무 관련 NAS를 제공하지 않는 [Panel B]에서는 <표 7>과 일관되게 *nB4TaxL*가 *TaxAvoid*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non-Big4에 대해서는 독립성 확보가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에 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 7>의 결과가 감사인 독립성 유지에서 비롯될 가능성을 높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인 조세행위에 가담하는 기업일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이익조정을 하고, 이익의 질이 낮다(Frank et al. 2009 ; Balakrishnan et al. 2019). 특히 높은 수준의 조세 회피는 법인세 관련 재무제표재작성(restatement)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Adams et al. 2024), 재

무제표 왜곡표시에 대한 책임이 감사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및 평판위험이 높은 감사인일수록 엄격한 감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억제시킨다(Fu et al. 2024). 따라서 [Panel B]의 결과는 세무전문성이 높은 non-Big4가 법인세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관련 계정과목의 왜곡표시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Panel A]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세무 전문지식이 법인세 계정 품질을 높이는 영향에 추가하여 NAS 제공 관련 경제적 영향으로 감사인이 기업에 유리한 조세전략 수립에 기여할 가능성(McGuire et al. 2012)과 NAS 관련 회계법인의 자원분산(distracton effect)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Beardsley et al. 2021)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Panel A]는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감사인의 NAS 제공으로 독립성이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non-Big4에 대해서도 감사인 제공 NAS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영업현금흐름 창출력(CFO)이 양호하고, 수익성(ROA)이 높으며, 부채비율(LEV)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높게 나타났다.

3. 추가분석

가. 세무전문성 대체적 측정(기타세무 매출/회계감사 매출) 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세무전문성을 기타세무 매출 기준 1위와 1, 2위로 정의하였으나, 세무전문성을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세무전문성을 회계감사 매출 대비 기타세무 매출로 재정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1)은 non-Big4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2)와 (3)은 각각 감사인 세무 NAS 제공 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9> 세무전문성 대체적 측정 시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axtoAudit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변수명	(1) 전체		(2) 감사인 세무 NAS 제공		(3) 감사인 세무 NAS 미제공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i>nB4TaxtoAudit</i>	-0.037	-2.48**	-0.004	-0.13	-0.045	-2.68***
<i>CFO</i>	0.228	7.74***	0.193	2.90***	0.234	7.26***
<i>FOR</i>	-0.054	-1.72*	-0.179	-2.79***	-0.032	-0.95
<i>SIZE</i>	-0.004	-1.72*	-0.000	-0.06	-0.004	-1.75*

〈표 9〉 세무전문성 대체적 측정 시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계속)

변수명	(1) 전체		(2) 감사인 세무 NAS 제공		(3) 감사인 세무 NAS 미제공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LEV	0.024	2.27**	-0.004	-0.17	0.030	2.60***
ROA	0.153	4.54***	0.129	1.66*	0.154	4.27***
LOSS	-0.001	-0.17	0.000	0.01	-0.001	-0.21
PPER	0.042	2.46**	0.075	2.21**	0.032	1.65*
RD	-0.023	-3.51***	0.001	0.06	-0.031	-4.50***
AudChg	0.004	1.03	0.004	0.40	0.003	0.87
Constant	0.055	1.30	-0.002	-0.02	0.062	1.33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137		0.078		0.152	
F-value	15.556***		4.10***		14.621***	
N	3,829		701		3,128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nB4TaxtoAudit*=기타세무 매출액/회계감사 매출액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세무전문성을 회계감사 매출 대비 기타세무 매출(*nB4TaxtoAudit*)로 재정의 한 경우에도 주된 분석결과가 유지됨을 <표 9>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인이 세무 NA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nB4TaxtoAudit*의 계수 값이 -0.045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적인 세무 전략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 non-Big4 감사인 선임 시 세무전문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non-Big4 1위 기업(공인회계사 수, 총매출액 기준) 분석결과

회계법인 규모가 클수록 세무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본 연구결과가 non-Big4 1위 기업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수 및 총매출액 기준 non-Big4 1위 기업과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가 non-Big4 1위에서 기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non-Big4 1위 감사인과 조세회피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op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변수명	(1) 전체		(2) 감사인 세무 NAS 제공		(3) 감사인 세무 NAS 미제공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i>nB4Top</i>	0.005	0.91	-0.006	-0.45	0.007	1.14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136		0.078		0.151	
F-value	15.438***		4.11***		14.571***	
N	3,829		701		3,128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nB4Top*=non-Big4 중 공인회계사 수 및 총매출액 기준 1면 1, 아니면 0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다.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후 감사인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조세회피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Desai and Dharmapala(2006) 방법을 적용하였다. 감사인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장기 유효세율을 이용한 분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교 목적을 위해 non-Big4의 세무전문성과 유효법인세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표 1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아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최소한 조세회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한 일시적인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 이전 감사인과 현 감사인의 법인세에 대한 영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후 연구기간을 확장하여 분석을 재 실시하여 재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1〉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유효법인세율

$$ETR_{i,t} = \beta_0 + \beta_1 nB4TaxL1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변수명	ETR=AccETR				ETR=CashETR			
	세무 NAS 제공 계수 값	세무 NAS 제공 t값	세무 NAS 미제공 계수 값	세무 NAS 미제공 t값	세무 NAS 제공 계수 값	세무 NAS 제공 t값	세무 NAS 미제공 계수 값	세무 NAS 미제공 t값
<i>nB4TaxL1</i>	-0.014	-0.33	-0.002	-0.10	0.009	0.21	-0.002	-0.13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083		0.149		0.164		0.188	
F-value	3.60***		41.38***		6.67***		48.63***	
N	550		2,639		550		2,639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AccETR*=5년간 법인세비용/5년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CashETR*=5년간 법인세납부액/5년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라. 내생성 통제 : 성향점수매칭(PSM)

세무전문 감사인을 선택한 기업 특성이 실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성향점수매칭(PSM) 후 분석을 재 실시하였다. <표 12>의 [Panel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무전문 여부에 따라 기업특성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내생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성향점수매칭 후에도 [Panel 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표 12〉 성향매칭방법(PSM)을 적용한 분석결과

[Panel A] 성향점수매칭(PSM) 결과						
	성향점수매칭 전			성향점수매칭 후		
	nB4TaxL1 (N=228)	non-nB4TaxL1 (N=3,601)	차이	nB4TaxL1 (N=228)	non-nB4TaxL1 (N=228)	차이
<i>CFO</i>	0.027	0.025	0.002	0.027	0.025	0.002
<i>FOR</i>	0.050	0.043	0.007*	0.050	0.048	0.002
<i>SIZE</i>	18.813	18.761	0.052	18.813	18.916	-0.103
<i>LEV</i>	0.372	0.371	0.001	0.372	0.397	-0.025
<i>LOSS</i>	0.355	0.280	0.075***	0.355	0.351	0.004

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단측검정).

〈표 12〉 성향매칭방법(PSM)을 적용한 분석결과 (계속)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axL1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Panel B] 성향점수매칭(PSM) 후 분석결과						
변수명	(1) 전체		(2) 감사인 세무 NAS 제공		(3) 감사인 세무 NAS 미제공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i>nB4TaxL1</i>	-0.030	-2.58**	-0.014	-0.46	-0.031	-2.38**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129		0.230		0.126	
F-value	4.36***		2.21***		3.75***	
N	456		74		382	

-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마. 기타세무와 세무조정 매출합계를 이용한 세무전문성 측정

본 연구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세무자문 중 기타세무가 세무전문성을 가장 잘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타세무 매출 기준 1위 또는 1, 2위를 세무전문 감사인으로 정의하였으나, Chyz et al.(2023)에서 세무조정 NAS의 지식전이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정 매출이 세무전문성을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기타세무와 세무조정 매출합계를 기준으로 non-Big4 중 1위와 2위를 세무전문성으로 재정의하여 분석을 재수행하였으며,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낮추지만, 앞서 II절의 2. 중소형 회계법인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무조정 매출이 회계법인 규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1, 2위 non-Big4의 시장점유율이 이후 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세무조정 매출이 세무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할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표 13〉 기타세무와 세무조정 기준 세무전문성 측정 시 non-Big4 세무전문 감사인과 조세회피

$$TaxAvoid_{i,t} = \beta_0 + \beta_1 nB4TaxAdjL1_{i,t} + \beta_2 CFO_{i,t} + \beta_3 FOR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 \beta_7 LOSS_{i,t} + \beta_8 PPER_{i,t} + \beta_9 RD_{i,t} + \beta_{10} AudChg_{i,t} + YD + ID + \epsilon_{i,t}$$

변수명	(1) 전체		(2) 감사인 세무 NAS 제공		(3) 감사인 세무 NAS 미제공	
	계수	값	계수	값	계수	값
<i>nB4TaxAdjL1</i>	0.001	0.13	-0.004	-0.23	0.001	0.22
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산업더미	포함		포함		포함	
Adj. R ²	0.136		0.078		0.151	
F-value	15.39***		4.10***		14.52***	
N	3,829		701		3,128	

1) 변수 정의는 <표 5> 참조.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양측검정).

3) 기업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여 t값을 산출함.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non-Big4의 세무전문성을 기타세무 매출액 기준 4분위로 측정하여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는 연속변수로 정의한 경우에도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무전문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결과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본 연구결과의 강건성이 낮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on-Big4 중 1, 2위만 다른 non-Big4에 비해 차별적인 세무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없는 non-Big4의 포함으로 결과가 희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가 non-Big4 세무전문성과 관련한 초기연구인 만큼 세무전문성이 소수 non-Big4에 국한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non-Big4의 피감사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는 감사인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McGuire et al. 2012 ; 김은희와 김임현 2017), 표본의 상당 부분을 Big4가 차지하고 있어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2020년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도입으로 감사시장에서 non-Big4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non-Big4에 대한 분석은 감사시장과 세무분야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non-Big4가 감사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전문성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무전문 non-Big4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인이 세무 관련 NAS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유지되었다. 이는 세무전문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게 세금 감소와 관련한 충분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세무전문성을 회계감사 매출 대비 기타세무 매출로 측정한 경우에도 유지되어 대체로 강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on-Big4의 세무전문성이 최소한 피감사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non-Big4의 세무전문성 지식전이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하며, 피감사기업이 감사인 선임시 조세전략에 따라 감사인의 세무전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non-Big4의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무전문성 변수를 제안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non-Big4의 세무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변수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추가분석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여러 연구를 통해 해당 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10.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실시현황」. 2010.10.5. 정례브리핑 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2.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2.4.28.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4.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3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2024.7.26. 보도자료.
- 김은희 · 김임현. 2017.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39-76.
- 이영한 · 허원 · 윤성만 · 최원석. 2010.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 197-222.
- 정광화 · 기은선. 2018.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는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가?”. 회계와정책 연구 제23권 제4호 : 101-122.
- 정남철. 2024. “상장기간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3호 : 125-162.
- Adams, M. T., K. K. Inger, M. D. Meckfessel, and J. J. Maher. 2024. Tax-related restatements and tax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9(4) : 951-979.
- Alsadoun, N., V. Naiker, F. Navissi, and D. S. Sharma. 2018. Auditor-provided tax nonaudit services and the implied cost of equity capital.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7(3) : 1-24.
- Balakrishnan, K., J. L. Blouin, and W. R. Guay. 2019. Tax aggressiveness and corporate transparency. *The Accounting Review* 94(1) : 45-69.
- Beardsley, E. L., A. J., Imdieke, and T. C. Omer. 2021. The distraction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1(2-3) : 101380.
- Chyz, J. A., R. Gal-Or, and V. Naiker. 2023. Separating Auditor-Provided Tax Planning and Tax Compliance Services : Audit Quality Implication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42(2) : 101-131.
- DeFond, M. and J. Zhang. 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3) : 275-326.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 145-179.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9.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 537-546.
- Dyreng, S. D., M. Hanlon, and E. L. Maydew. 2008.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 61-82.
- Frank, M. M., L. J. Lynch, and S. O. Rego. 2009.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 467–496.
- Fu, Y., Y. Lim, and E. Carson. 2024. Accounting firm office size and tax aggressiveness. *Accounting & Finance* 64(1) : 1183–1219.
- Gleason, C. A. and L. F. Mills. 2011. Do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mprove the estimate of tax reserv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5) : 1484–1509.
- Goldman, N. C., M. K. Harris, and T. C. Omer. 2022. Does task–specific knowledge improve audit quality : Evidence from audits of income tax accoun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99. 101320.
- Graham, J. R. and A. L.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 563–594.
- Klassen, K. J., P. Lisowsky, and D. Mescall. 2016. The role of auditors, nonauditors, and internal tax departments in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The Accounting Review* 91(1) : 179–205.
-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3) : 975–1003.
- Sun, X. S. and A. Habib. 202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 A systematic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5(3) : 675–715.
- Wang, F., S. Xu, J. Sun, and C. P. Cullinan. 2020. Corporate tax avoidance : A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4(4) : 793–811.

Tax Specialist Auditors and Tax Avoidance :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Hyun Ah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xpertise of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non-Big4) and the tax avoidance of their client firms. Prior literature reports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of tax expertise. Howeve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ample consists of Big4 and non-Big4 typically do not have tax-specific partners and departments unlike Big4, which may lead to different outcomes regarding the tax expertise of non-Big4.

The analyses are conducted on 3,829 firm-year observations of listed companies audited by non-Big4 from 2020 to 2022, during which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for public firms and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ere fully implemented. Tax expertise is defined as the top or top two positions in non-audit service revenue related to tax consulting in accounting firms' annual reports, while tax avoidance is measured using the method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ax expertise of non-Big4 and tax avoidance and it is maintained when auditors do not provide tax-related non-audit services, suggesting that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which could increase tax avoidance, does not exist in the case of non-Big4. Additional analyses confirm that the results remain consistent when tax expertise is defined based on the proportion of other tax revenue relative to audit revenue.

This study extends prior research through the results that tax expertise of non-Big4 does not contribute to the tax avoidance of their client firms. Additionally, it also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roducing a new measure of tax expertise for non-Big4. Furthermore, as tax strategies are among the critical decisions for a firm, this study contributes by suggesting the need to consider the influence of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when selecting auditors.

〈Key words〉 Tax Specialist Auditor, Tax Avoidance,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ukolo@koreatech.ac.kr, First Author